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(안)

2023. 8.

동물복지환경정책관
(반려산업동물의료팀)

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(요약)

1. 추진 배경 및 문제점

□ **반려동물에 대한 양육·관심 증가**로 관련 **영업장**도 **빠르게 증가***

* ('16) 4.2 → ('18) 13.5 → ('20) 19.3 → ('22) 22.1천 개소(생산·판매업 비중 : 27.3%)

□ 지나친 **반려동물 상품화, 불법영업** 문제 개선을 위해 **관리제도 강화**

* ('08) 판매·장묘업 등록, ('12) 생산업 신고, ('18) 생산업 허가, 전시·미용·운송·위탁관리 등록

** ('23) 무허가·무등록 영업장 직권 폐쇄·말소, 무허가 영업 처벌강화(징역2년/벌금2천), 수입·판매·장묘업 허가, 거래내역 신고, CCTV 설치장소 구체화, 인력기준 강화(50마리/1인)

□ 하지만, **무분별한** 반려동물 **생산·판매** 등으로 인한 **문제 지속**

○ **「번식장-경매장-펫숍」** 구조에서 **모견 학대 등 지속 발생하나, 개체 관리 및 점검·단속 인력 부족 등 한계*** **지적**

* 생산단계의 모견 개체수 파악이 안되고, 부모견 및 자견별 개체번호를 부여하고 있으나 어떤 어미가 생산했는지 알 수 없으며, 개체번호 부여·관리 방식 부재

○ **파양수요***를 악용한 **변칙영업장의 동물 학대 문제** 사회적 **이슈화**

* 반려인의 약 22.1% 파양을 고려('22, 동물보호복지 국민의식조사)

< 반려동물 영업관련 문제 사례 >

① **생산성·상품성 떨어지는 반려동물**(모견 등)**을 학대시켜 폐사**

* 생산성·상품성 떨어진 반려동물 팔아넘긴 후 아사(약 1,200여 마리) 보도('23.4)

② **열악한 사육장**에서 **공장식 생산**으로 **모견 학대·폐사, 무허가 생산업자 경매 참여**

* 330㎡ 미만 영업장에서 48마리 부모견이 63마리 강아지 생산(실태조사, '21.12)

* 무허가 생산업자의 정보를 허위로 기재, 경매 참여 사례 적발('23.7. 대전)

③ '**보호비**' 명목의 **고액 동물 파양비 수령** 후 학대·유기하는 **변칙영업** 확산

* '보호소'를 사칭한 변칙영업 펫숍에서 '파양동물 암매장(개 사체 119구)('23.5) 등

④ 유기동물 '**보호소**'를 **표방**하며 **고객**을 **유인**한 후 **고가**의 **품종견 구매 유도**, 반려동물용품·병원·보험 **끼워팔기 사례** 등 **피해 발생**

* '안락사 없는 보호소' 가면 쓴채...파양견 두 번 울리는 신종 펫숍 (한국일보, '23.5.4)

⑤ **SNS** 등 활용, **개인 간 분양**으로 위장한 **음성적 동물판매 성행**

* 유기동물 판매, 매매 계약서 미제공 등 사례가 서울시 등 지자체로 다수민원 접수

⑥ **불법 동물 카페의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 및 학대 발생**

* 전시동물을 망치로 때려 폐사, 전시동물 다수 질병 감염 보도(SBS, '22.11.27)

2. 개선 방향 및 전략

비전	**동물복지에 기반한 반려동물영업 제도 정착**
달성 목표	◇ **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 : (도입) '24. → (등록완료) '26.** ◇ **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 : (시범) '24. → (구축·운영) '26.** ◇ **변칙영업 규제 마련 및 이행, 전시업 허가제 전환('24)**

전략 및 과제	4대 전략	세부 추진 과제
	1. 반려동물 생산·판매 구조 전환	① **생산업 부모견(모견·종견) 등록제** 도입 ② 생산-판매-양육 **全단계 이력관리** 추진 ③ **온라인 광고 등 준수**사항 강화 ④ 브리더 중심 생산·판매로 전환 검토(중장기)
	2. 보호소 위장 변칙영업 근절	① **영업·비영업** 공간의 **물리적 구분** ② 보호시설 **영리 행위 금지** 명확화 ③ 민간보호시설의 **파양동물 수용**
	3. 영업장 사육 동물 학대 처벌 및 관리 강화	① **노화·질병 동물** 유기 등 처벌 강화 ② **CCTV 설치** 대상 업종 확대 ③ **전시업 허가제 전환** 및 관리기준 명확화
	4. 불법영업 집중 단속 및 교육·상담 강화	① 중앙·지자체·단체 **합동점검 강화** ② 영업자 대상 **준수사항 교육** 확대 ③ **파양 상담** 및 **입양 전 교육** 강화

[반려동물영업 체계의 미래 모습]

	현재	미래 모습
번식 (생산)	• 생산업 부모견 미등록 • 생산업 모견 숫자 파악 불가 • 모견 출산 휴식기(10개월), 노화 동물 학대 확인 곤란	• 생산업 부모견(모견 · 종견) 등록 • 생산업 전체 모견 숫자 파악 • 모견 출산 휴식기, 노화 동물 학대 확인 · 적발 가능
판매 (경매)	• 영업 · 비영업 공간 불명확 • 무허가 생산업 경매 확인 곤란 • 건강 등 정보 제공 미흡 • 번식-경매-펫숍 판매 구조	• 영업 · 비영업 공간 구분 • 무허가 생산업 경매 참여 차단 • 건강상태 등 정보 제공 강화 • 브리더 중심 생산 · 판매 검토(중장기)
전시	• 동물전시업 등록제 • 동물 관리기준 불명확	• 동물전시업 허가제 전환 • 전시동물 관리기준 마련
분양 (구입)	• 반려인이 조건없이 구입 * 높은 파양 수요(약 22%) • 불법 가정 분양 방치	•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제도화 * 반려동물 에티켓, 행동지도 등 • 가정 분양 동물의 등록 시 모견 번호 연결 → 불법 가정분양 퇴출
파양	• 보호소 위장 변칙영업소 (파양비 지급후 파양) • 일부 동물 유기	• 보호소 영업행위 금지 • 민간동물보호 시설 파양 수용 * 파양 기부금·후원금 내역 공개 등 • 불가피한 사유 지자체 인수 * 장기요양, 군복무, 재해 등
이력 관리	• 총량단위 관리 * 거래내역 신고, 영업실적 보고 • 불법 거래 확인 곤란	• 개체단위 이력 관리 * 모견 등록번호 + 자견 개체번호 연결 → 거래내역 신고, 영업실적 보고 * 「생산 - 판매 - 양육·사망」 이력 관리 • 무허가·공장식 번식업 관리·퇴출

3. 세부 추진과제

1. 반려동물 생산 · 판매 구조 전환

❶ 생산업 부모견(모견·종견) 등록제 도입

○ **등록대상 동물의 범위***에 동물생산업의 부모견(모견·종견) 등 **번식 목적의 개**를 포함('23.下 실태조사** → '24. 개정) 시행령

* (예시) 「동물보호법」 제69조제2항에 따른 **동물생산업장에서 기르는 개**

** 모견·종견 사육 두수, 개체관리카드 관리현황, 번식능력 없는 개체 관리현황 등 사육현황

○ 등록 비용 및 등록절차 이행기간 등을 고려, **2년간 유예기간 부여 검토**

❷ 생산–판매–양육 全단계 반려동물 이력관리 추진

○ 생산업 **모견 등록번호**와 함께, **자견 개체번호**를 부여하여 **이력 관리체계** 구축('23.下 연구용역* → '24. 예산확보 → '25. 시스템 구축)

* 동물등록 개편(자견과 모견 번호 연결, 암수 구분 등), 동물보호정보시스템 데이터 등 검토

○ 반려동물 **개인분양**(자견) 시에도 **모견 등록번호를 연계·등록** 추진

❸ 영업자 정보 제공 투명성 강화

○ 온라인을 통한 광고·영업 시 **전자상거래법** 등 관련 **규정***을 준수하도록 하여 **과대광고 제한, 대면판매 명확화**('24) 시행규칙

* 관할 지자체에 통신판매업 신고, 표시·광고 관련 규정 준수 등

○ 동물병원·수의사 작성 **예방접종 및 건강 확인서 소비자 제공 의무화**, 영업 관련 실적 **증빙자료 거짓·허위 기재** 금지('24) 시행규칙

* 현행 규정에는 영업실적 증빙자료의 거짓·허위 기재·제출 시 제재 조항 부재

❹ (중장기) 브리더 중심 생산·판매 전환

○ **펫숍·온라인 판매를 제한**하고 있는 영국 등 **사례, 경매를 허용**하는 스페인·일본 등 **사례 비교 분석**·시사점 도출('23.下) 및 공론화

* 「동물복지법」 제정과 연계, 공론화 및 제도화 검토

2. 보호소 위장 변칙영업 근절

❶ 영업·비영업 공간의 물리적 구분

○ 영업자 준수사항(시설기준)에 다른 용도의 **시설 간 '분리'**에 대한 개념을 **구체적으로 정의*** 및 **보호시설로 위장** 판매 시 **처벌** 시행규칙

* '연결된 출입구가 없고, 시야가 차단된 벽이나 층으로 구분'으로 명확화

❷ 보호시설 영리행위 금지 명확화

○ **민간동물보호시설** 등의 **영리 목적의 운영·홍보 제한**('24.) 법

* (개정안, 예시) 누구든지 동물보호소, 동물안식처 등 명칭을 불문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민간동물보호시설 또는 그와 유사한 시설을 운영하거나 홍보해서는 아니된다.

○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**연내 법안 발의** 등 추진

❸ 민간동물보호시설의 파양동물 수용 추진

○ 반려인의 파양 관심이 변칙영업으로 가지 않도록 **선진국 민간동물 보호시설**의 파양동물 수용 등 **운영 사례 조사**('23.下)

○ 파양 시 **기부금 투명성 제고**를 위한 **제도적 장치 마련**('24.) 시행규칙

* 민간동물보호시설 등 기부금·후원금 처리 및 회계 내역 공개 등

3. 영업장 사육 동물 학대 처벌 및 관리 강화

❶ 노화·질병 동물관리 및 학대 처벌 강화

○ **생산업 사육 동물**의 질병·상해 시 **수의사 검진 및 기록 관리 의무화**('23.下~) 시행규칙

* 질병·상해 동물의 건강 상태를 수의사가 검진 후 그 검진 내역을 기재

○ 노화·질병 동물의 유기·폐기 목적 거래 시 **처벌 규정 강화**('24.) 법

* (현행) 과태료 3백만원(영업정지 3개월) → (개정) 벌금 3백만원(영업허가 취소)

❷ CCTV 설치 대상 업종 확대

○ 생산(사육실, 분만실 및 격리실)·수입(사육실, 격리실)·동물전시업(전시실, 휴식실) 등 영업장 내 CCTV 설치 대상 업종* 확대('24.) 시행령

* (현행) 판매·장묘·위탁관리·미용·운송업 등 5종 → (개정) 생산·수입·전시업 등 3종 추가

❸ 전시업 허가제 전환 및 관리기준 명확화

○ 현행 등록제인 전시업을 허가제로 전환('24)하고, **사육동물 관리기준*** 구체화 및 제도화 추진(법안발의 '23.下, 기준 제도화 '24) 법 시행규칙

* 간식 제한, 시설분리, 자연채광, 바닥재 기준, 중성화 의무 등 검토, 수용 동물 수 및 반려동물 외 다른 동물의 전시·사육 제한, 교육·실습 동물 관리기준 검토 병행

4. 불법영업 집중 단속 및 교육 · 상담 강화

❶ 중앙·지자체·민간 상시 점검 및 협업 강화

○ 영업자 기획점검 등 **상시점검**을 **강화**하고, 주요 점검사항 **해설서**(현장조사, 경찰공조·법령해석 등) **및 체크리스트 마련·배포**('24.)

○ 지자체 동물복지 **인력 확충 및 전담부서** 마련 노력* 지속

* 인력확보·재배치를 위한 지자체 배포자료(행안부) '동물복지인력 확충' 포함('22.11. 기조치)

○ 명예동물보호관(동물보호단체 등) **역할 강화*** 및 포상 확대('24)

* (현재) 동물보호관 지원, 단순 계도·홍보 → (개선안) 영업자 공동 점검 등

❷ 영업자 대상 준수사항 교육 확대

○ **동물장묘업** 교육과정 **개설**('23.下), **지자체 연계*** 교육과정 발굴('24.)

* 지자체, 동물보호단체 및 협회 주관 교육 이수증 제출 시 일정 시간 인정 등

○ 고령 영업자 대상 교육, 업종별 교육 등 **수요기반 현장 교육** 추진('24.)

❸ 파양상담 및 입양전 교육 강화

○ 선진국의 파양동물 수용 시 **파양상담 채널 및 사례조사**('23.下)

○ **예비 반려인** 등 대상 반려동물 **입양 전 교육** 제도화 검토 병행('24.)

목 차

Ⅰ. 추진 배경 ····· 1

Ⅱ. 반려동물영업 현황·제도 및 문제점 ····· 2

Ⅲ. 해외 사례 및 시사점 ····· 9

Ⅳ. 개선 방향 및 전략 ····· 13

Ⅴ. 세부 추진 계획 ····· 15

1. 반려동물 생산 · 판매 구조 전환 ····· 16

2. 보호소 위장 변칙영업 근절 ····· 20

3. 불법영업·학대 처벌 및 관리 강화 ····· 22

4. 불법영업 집중단속 및 교육·상담 강화 ····· 23

Ⅵ. 향후 일정 ····· 26

Ⅰ. 추진 배경

□ 반려동물 양육·관심 증가로 관련 영업장도 빠르게 증가 추세

○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·수요 증가로 반려동물의 생산·판매·전시업 및 각종 반려동물 서비스업 등이 **과거 10년간 약 10배**(연평균 36%) **증가***

* ('12) 2.1 → ('14) 2.7 → ('16) 4.2 → ('18) 13.5 → ('20) 19.3 → ('22) 22.1천 개소
(「동물보호법」개정('17.3.)으로 '18년부터 4개 업종(미용·운송·전시·위탁관리업) 추가)

○ 특히, **반려동물의 생산·판매업은 전체 영업의 27.3% 수준으로 높은 비중**을 차지하며, 최근 미용업 등 서비스업도 증가 추세

* 생산·판매업 비중(생산·판매업/전체 반려동물 영업) : 27.3%(6.0천/22.1천 개소)

□ 지나친 반려동물 상품화로 인한 문제 개선 위해 관리 제도 강화

○ 2008년 등록제 도입 이후 **생산·판매·수입·장묘업 허가제** 전환

* (`08) 동물 판매업·장묘업 등록제, (`12) 생산업 신고제, (`18) 생산업 허가제, 수입·전시·위탁관리·미용·운송업 등록제, (`23) 판매·수입·장묘업 허가제

○ 반려동물 **영업자 준수사항*** 및 **처벌수준****도 단계적으로 상향

* ('23.4) 12개월 미만 개·고양이의 교배·출산 및 2개월 미만 개·고양이의 판매 금지
늙거나 병든 동물을 유기·폐기 등의 목적으로 거래 금지

** (종전) 무허가·무등록 영업 시 : 5백만원 이하의 벌금
(강화) 무허가 :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, 무등록 : 1년/1천만원

□ 하지만, 무분별한 반려동물 생산·판매 등으로 인한 문제 지속

○ 소위 **「번식장-경매장-펫숍」**의 반려동물 공급구조에서 발생하는 모견 학대*, 전시장 동물들에 대한 학대 등 지속 발생

* ('23.3.5) 번식·경매장에서 개 1,200 마리를 만 원씩 받고 데려와 방치·아사 사건 발생

○ **파양수요***를 악용한 **변칙영업** 증가 및 학대 문제 사회적 이슈화**

* 반려인의 약 22.1% 파양을 고려('22, 동물보호복지 국민의식조사)

** ('23.5.28) '보호소'를 사칭한 변칙영업 펫숍에서 '파양동물 암매장' 정황 확인

☞ **국내 실태와 선진국 제도**의 면밀한 분석을 거쳐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**반려동물 영업관리 방향을 설정**하고, **세부 추진 계획** 마련

Ⅱ. 반려동물영업의 현황 · 제도 및 문제점

1 반려동물영업 현황

□ 총 8개 영업 분야 2만 2천개소가 허가 또는 등록되어 있음

○ 「동물보호법」상 생산·판매·장묘업 등 **총 8개의 영업**이 규정되어 있으며 약 **2만 2천개소***의 영업장이 **허가·등록**됨('22)

* 허가·등록 현황 : ('19) 17,155 → ('20) 19,285 → ('21) 20,685 → ('22) 22,076

○ 업종별로는 **미용업**(39.7%), **위탁관리업**(23.2%), **판매업**(19.4%) 순

* (허가) 생산업(2,086), 수입업(125), 판매업(3,944), 장묘업(68)
(등록) 전시업(638), 위탁업(5,034), 미용업(8,868), 운송업(1,313)

□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은 지속 증가

○ 미용 및 위탁관리, 운송업 등 반려동물 **영업 전반에서 허가·등록 영업이 증가**, 특히 운송업 등 **서비스업 증가세가** 두드러짐

○ **판매업, 전시업**의 경우 전년과 비교하여 **소폭 감소**

※ 반려동물 영업 현황 * 단위 : 개소, %

구분	2020	2021	2022	'22-'21(증가율)
생산업	1,952	2,019	2,086	67(+3.3)
판매업	4,159	4,010	3,944	▽66(▽1.6)
수입업	120	122	125	3(+2.5)
전시업	664	653	638	▽15(▽2.3)
미용업	7,271	8,222	8,868	646(+7.9)
위탁관리업	4,406	4,802	5,034	232(+4.8)
운송업	656	794	1,313	519(+65.4)
장묘업	57	63	68	5(+7.9)
합 계	**19,285**	**20,685**	**22,076**	**1,391(+6.7)**

○ 관련 영업 증가로 '22년 **종사자**가 전년 대비 **4.9%(1.2천명) 증가**

* 종사자 수 현황 : ('20) 24,691 → ('21) 24,863 → ('22) 26,093 * 보호복지실태조사('22)

참고1 반려동물 영업 형태 및 입양경로

◇ **반려동물영업은 생산·판매·미용·훈련·장묘 등 직접 반려동물을 다루는 업종**으로 **「동물보호법」**에서 **총 8개**의 영업 규정

* (허가) 생산업, 수입업, 판매업, 장묘업 / (등록) 전시업, 위탁업, 미용업, 운송업

<반려동물 관련 영업 형태 구분>

구분	생산	판매·유통	양육	사후
기능	• 번식 • 사육	• 분양 • 수입	• 미용, 위탁보관, 운동, 전시, 교육·훈련	• 사체 처리 • 장례 서비스
업종	• 생산업	• 동물판매(경매)업 • 동물수입업	• 동물전시업 • 동물미용업 • 동물위탁관리업 • 동물운송업	• 동물장묘업

○ 다만, **동물진료**는 기존의 **수의사법**에서 **동물진료업**을 별도로 규정(동물병원 신고제)

○ 이외에 반려동물 사료, 용품, 보험 등 반려동물을 직접 다루지 않고 반려동물의 생산·양육 등과 연관되는 산업분야가 있음

◇ 반려동물 **입양경로는** 주로 **동물판매업자, 지인 등 개인, 동물보호센터** 등 **3가지 방식**를 통해 이루어 짐

○ **반려동물 입양의** 약 **24%**가 **동물판매업자**에게서 **구매, 동물보호센터** 및 **민간 동물보호소** 등을 통한 **입양**은 **11.4%에 불과**

<반려동물 입양경로> * 동물보호인식조사('2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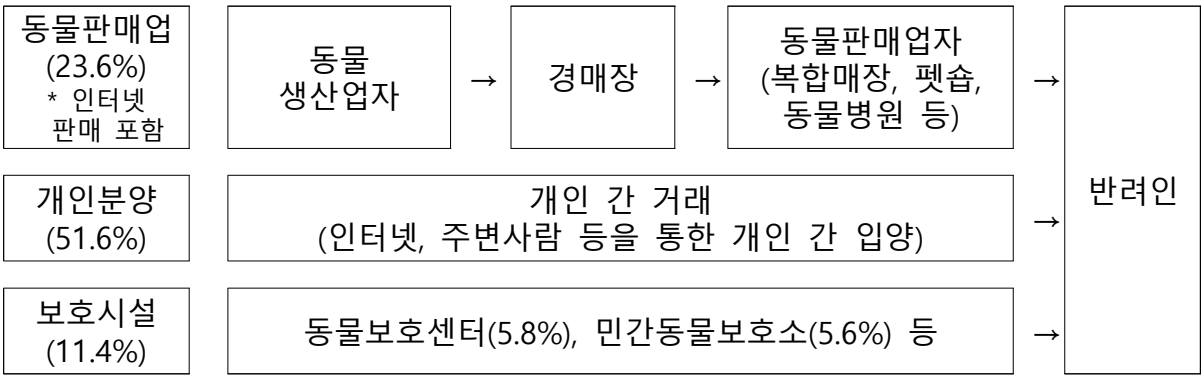

2 반려동물영업 제도개선 추진 현황

□ 반려동물 영업제도는 법 제정('91) 이후 총 4차례 대폭 강화

○ 반려동물 영업제도 **전부개정('08, '12, ,'23) 3회**, 일부개정('18) 1회

※ 반려동물 영업제도 강화 주요 연혁

- ('08년) 동물**판매업·장묘업** 등에 대한 **등록**제 시행
- ('12년) 동물**생산업 신고**, 동물**수입업 등록제** 추가
- ('18년) 동물**생산업 허가 전환**, **전시·위탁관리·미용·운송업 등록제 추가**
- ('23년) **수입업·판매업·장묘업**을 등록제에서 **허가제로 전환**

○ 반려동물 양육·관심 증가에 따라 **생산·수입업** 등을 **제도 내로 편입·관리**하고, 전시·위탁관리·미용·운송업 등 **서비스업**도 **추가**

□ 특히,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해 처벌·관리 규정 대폭 강화('23.4시행)

○ **개정 법령**('23.4월 시행)에서는 **지자체 직권 말소·폐쇄** 권한 부여 등 반려동물 영업자의 **위법 사항에 대한 조치** 규정 등 마련

○ **수입·판매·장묘업 허가제** 전환, **CCTV** 설치 구체화 및 **거래내역 신고제** 도입 등 관리 규정 강화

※ 반려동물 영업 관리규정 강화 주요내용('23.4.)

- (법 제77조 직권말소) 폐업 사실 확인 후 **지자체 직권 말소** 가능
- (법 제78조 영업자 준수사항) 사육·관리 인력 **생산**·판매·수입 **50마리당 1명/ 전시·위탁 20마리당 1명**, **모견 출산 후 10개월 이상 휴식** 기간
- (법 제79조 등록신청) 반려동물 판매 시 **동물등록 신청 후 판매**
- (법 제80조 거래내역 신고) 동물 **거래내역**을 지자체에 **신고**
- (법 제85조 폐쇄) 무허가, 무등록 영업장 **지자체 직권 폐쇄** 가능
- (법 제87조 CCTV) 허가 및 등록 영업자 **CCTV 장소 구체화**
- (법 제97조 벌칙) **무허가영업**(징역2년/벌금2천), **무등록영업**(징역1년/벌금1천)
  - 생산업 12개월 미만 출산·교배 금지, 발정 유도 금지(과태료 5백만원)
  - 2개월령 미만 판매, 노화 동물 유기·폐기 목적 거래 금지(과태료 3백만원)

참고2 반려동물영업 단속 추진 현황

◇ **불법영업** 등에 대한 **농식품부·지자체·동물단체 합동단속** 중('23.3~12.)

○ **(합동점검) 동물복지 민감업종*** **불법영업 집중 점검**(반기 1회, 정례)

* 동물보호단체 제보 등 다수민원이 발생하는 **생산·판매·전시업** 집중

○ **(기획점검) 무허가·무등록영업, 편법영업**에 대해 **동물보호단체 등 현장 전문가*** **동반 기획조사**(수시)

* 동물보호명예감시원, 동물보호단체, 동물의료전문가, 경찰(특사경) 등 협조·동행 **무허가·무등록 영업, 편법영업** 실태·위법성 여부 등 특별 점검

○ **(기본점검) 신설·강화**되는 시설·인력 등 영업자 **준수사항 점검·계도**

* 지자체별 자율 점검계획 수립, **영업자 전수 점검** 추진(연 1회 이상)

◇ 상반기('23.3~6) **총 8,162건 단속**하여 **고발·행정처분** 등 **251건 조치**

○ **동물학대, 무허가 동물생산·판매·장묘업** 등 8건 **적발하여 고발**

※ 동물보호법 위반 적발·고발 사례
-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**무등록 동물장묘업체, 미용업체**(경기 안산, 대구, 광주)
- **변경허가 사항 미신고 동물생산업체**(경기 김포)
- **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**한 **동물판매업체**(경기 이천)
- 허가받지 않고 영업한 **무허가 동물생산업체**(경기 고양, 포천, 전북 진안)

○ **시설·인력**기준·영업자 **준수사항** 위반 등 **50건 행정처분***, 허가증 미게시와 같은 **경미한 위반** 사항 **193건 시정조치**

* 사육설비 기준 미달(영업정지 15일), 동물 전달 방법 위반(과태료 40만원), 개체관리카드 미표기·영상처리기기 미보관(영업정지 7일) 등

※ 이와 별도로 **동물학대 개 도살장** 등 **입건** 조치 진행

* (경기 특사경) 동물학대(개 도살) 현장 적발하여 입건(6.2)

◇ **영업자 점검·단속 강화**를 통해 **영업질서 확립**에 **기여**하였으나, 단속 **불만 민원** 및 **과중한 업무**로 **담당 공무원 부담 증가**

○ **현장 점검** 시 **적발 사항**에 대해 영업자 **강한 불만*** 제기

* 시설·인력기준,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 등 지적에 대해 납득하지 않음

○ 영업 **관리와 함께 다른 업무를 병행**, 담당자 **업무 피로도*** **가중**

* 일선 공무원은 업무강도가 높은 동물복지 업무 기피(상당수가 1년내 휴직·이동)

3 반려동물영업의 문제점

□ 동물복지를 고려하지 않은 공장식 번식을 통한 생산·판매 고착

○ 「번식장-경매장-펫숍」으로 연결된 반려동물 생산·판매 가치사슬이 **동물경매장**을 **매개**로 **산업적으로 성장**하여 고착되고 있음

* (경매 거래현황) 평균 1개소에서 연간 약 7천 마리(주 150마리), 거래액의 11% 수수료(매수·매도 양측 5.5%), 수수료 연간 2억 3천만 원(30만 원/1마리 낙찰 시)

** 펫숍은 경매장에서 낙찰받은 품종 강아지를 소비자에게 80~100만 원에 판매 경향

○ **부모견 방치·학대, 상품성 낮은 동물 불법 처리*** 등 문제 지속 발생

* (경기 양평) 동물번식·판매업자가 상품성 떨어진 반려동물을 마리당 1만원에 팔아넘긴 후 아사(약 1,200여 마리)시켜 동물 학대로 기소(총 32명, 경찰청, '23.5.17)

- 생산업 모견의 출산 **휴식기**(10개월 이상), **번식력 없는 노화 동물 보호** 등 **생산단계 모견·종견 관리**에 대한 **현장 확인 곤란**

* 생산단계의 모견 개체수 파악이 안되고, 부모견 및 자견별 개체번호를 부여하고 있으나 어떤 어미가 생산했는지 알 수 없으며, 개체번호 부여·관리 방식 부재

□ 보호소로 위장, 판매 또는 파양 수요를 활용한 변칙영업 확대

○ 유기동물 '보호소'를 표방하며 반려동물 **입양 희망자 유인**하여 반려동물을 판매하거나, **허위·과장광고**를 통해 **무분별한 분양**을 유도

- D사 - 동물보호시설을 표방하나 **위탁관리업, 동물판매업을 하는 영리업체**로 허위·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유인·알선하여 동물 상품화 등 문제 초래
- H사 – 무등록 판매업으로 적발되어 행정조치, 다른 사람 명의로 동물판매업과 위탁관리업을 등록한 후 '보호소'를 표방한 변칙 영업행위 지속

○ 동물판매업자가 **사육포기 동물**의 **보호와 재입양 명목**으로 **금전**을 챙기는 **변칙영업**(소위 '신종펫샵')이 **프랜차이즈화***로 확장

* 전국적으로 130개소, 8개 업체가 프랜차이즈로 운영 추정('23.5월 기준)

- 반려인으로부터 **파양비 등 수령 후 불법 유기·폐기 사례*** **적발**

* (경기 여주) 비닐하우스 농장에서 다수 개 사체(119구) 발견, 신종 펫숍에서 피의자에게 금전을 지불하고 불법 유기·폐기한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 수사 중('23.4~)

※ **반려동물 변칙영업 피해 유형** : (**파양인**) 파양동물 소식을 알 수 없음, 파양신청 철회 불수용, (**입양인**) 파양동물 입양 후 질병 확인, 파양동물로 유인 후 어린 개체 판매 등

□ 제도 강화에도 불구, 무허가·무등록 영업, 과장 광고 등 지속

○ 제도 강화와 단속에도 불구하고, **일부 반려동물 영업자**의 경우 **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영업, 무허가 영업 등 불법 자행**

* ('23.3. 경기도 합동점검) 허가 영업장 외에 추가 장소에서 불법 사육 적발
* ('23.7. 대전 경매장) 무허가 생산업소의 정보를 허위로 기재, 경매 참여 사례 적발

○ **서울 소재 동물카페**(동물전시업) 내 **학대사건** 발생('22.9) 후 **전수조사**(서울, 82개소) 결과 **영업장 내 동물관리 부실*** 확인('22.12)

* 질병 감염 18개소, 높은 비만율(라쿤 38.7%, 개 22%, 고양이 17.9% 등), 안전장치 미흡(탈출 방지를 위한 이중문 미설치 40% 등), 휴식공간 부족, 물 제공 미흡 등

○ 온라인 광고 시 **영업 정보**(허가번호, 업소명, 주소 등) **제공의무 위반**

- 실태조사 결과, 온라인 **광고 게시글**의 **98.8%가 정보제공 부실**

* (실태조사, '23.5) 온라인 영업 시 판매업 허가번호 다수 미기재 및 잘못 기재, 허가번호 미기재 또는 허위 기재, 판매 동물에 대한 건강 관련 정보 등 미제공 등

○ **시설·인력기준,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** 사례도 계속 발생

* (실태조사, '21.12) 영업자 실적보고서·거래현황·개체관리카드 미작성, 번식능력 없는 개체 관리 미흡, 교배·출산 사이 기간 미준수, 설치류·해충 방지시설 설치 미흡 등

□ 영업제도 강화 등 업무 증가에 비해 현장 집행력이 부족

○ **「동물보호법」 전부개정** 등으로 반려동물 **영업관리**를 위한 **제도**가 **강화**되었고, **신규제도*** 도입으로 **현장 집행력 부족 심화**

* 수입·판매·장묘업 등 허가제 전환, 거래내역 신고제 도입, 불법·편법 영업(무허가·무등록 영업) 처벌 강화에 따른 지자체 행정·점검 업무 추가 가중

○ **행안부**는 **향후 5년간 기준인건비 동결** 입장이며, **일부 지자체**는 **단체장 관심 등**에 따라 **동물복지 인력 확보에 소홀한 경향**

* 기준인건비에 동물복지 인력 증원을 반영하여도 다른 업무로 인력을 배치

○ 일선 담당자가 **영업지도·관리 업무 외 다른 업무***를 **병행**

* ('22년 설문조사) **민원 대응, 동물보호센터 운영, 예산사업** 등 업무를 병행, 가축방역·축산업 인허가·축산물위생 등 업무를 겸하는 경우도 상당수

참고3 반려동물 영업 관련 주요 문제 사례

① **생산성·상품성 떨어지는 반려동물**(모견 등)**을 학대시켜 폐사**

* (경기 양평) 동물번식·판매업자가 생산성·상품성 떨어진 반려동물을 마리당 1만 원에 팔아넘긴 후 아사(약 1,200여 마리)시킴('23.4월 다수 언론 보도)

② **열악한 사육장***에서 **공장식 생산**으로 **모견 학대 및 폐사**

* 운영자 1인(61%)이 330㎡(100평) 미만 영업장(77%)에서 48마리의 부모견을 사육하여 연 63마리의 강아지를 생산·판매(생산업 실태조사, '21.12)

- 죽은 새끼 옆 어미...지하 방에서 고양이 불법 사육 후 판매 (YTN, '21.3.25)
- 탈장된 채 비틀...'합법 번식장'서 출산 기계로 죽어간 개들 (한겨레, '22.12.10.)

③ **'보호비'** 명목 **고액 파양비 수령** 후, **즉시 재분양** 또는 **불법 유기·폐기**

○ 경기 광주에서 **무등록 '펫숍'**에서 **동물방치 및 학대·폐사**(JTBC)

○ 경기 여주에서 **'신종펫숍' 불법 유기·폐기**(개 사체 119구) **보도**('23.4)

④ 유기동물 **'보호소'**를 **표방**하며 **고객**을 **유인**한 후 **고가**의 **품종견 구매 유도**, 반려동물용품·병원·보험 **끼워팔기 사례** 등 **피해 발생**

- '신종 펫숍'은 어떻게 파양견 팔아 돈을 벌었나 (한겨레, '20.6.5)
- '안락사 없는 보호소' 가면 쓴채...파양견 두 번 울리는 신종 펫숍 (한국일보, '23.5.4)

⑤ **SNS** 등 활용, **개인 간 분양**으로 위장한 **음성적 동물판매*** **성행**

○ **회원 수 10만명** 이상인 **온라인 카페, 일일 게시글 100건** 이상인 **SNS** 등을 통해 **개인 간 유·무상 분양 성행으로 피해*** **발생**

* 유기동물 판매, 동물등록 미신청, 매매 계약서 미제공, 백신접종 및 질병 여부 등 동물 건강 상태 파악 불가로 소비자 피해, 서울시 등 지자체로 다수민원 접수

○ **불법 생산·판매업자**들의 **음성적 동물판매*** **등 악용 문제** 있으나, 개인 거래에 대한 **관리 수단 부재로 단속·적발 어려움**

⑥ **불법 동물 카페의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 및 학대 발생**

* 전시동물을 망치로 때려 폐사, 전시동물 다수 질병 감염 보도(SBS, '22.11.27)

○ 서울 소재 **동물전시업** 조사 결과 **정식 등록은 4개소뿐, 전시 동물 감염병 보유·사육조건 열악**(서울시, '22.12)

Ⅲ. 해외 사례 및 시사점

1 반려동물 영업 해외 사례

□ (인허가) 허가 또는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, 일부 갱신제 운영

○ 대부분 선진국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개·고양이 등을 **번식 또는 판매** 하려면 사육시설 등 기준을 갖춰 **허가**를 받거나 **자격**을 취득할 필요

○ 관리 필요성에 따라 **유형별**로 **구분**하며, **갱신제**를 통해 **지속 감독**

- **(영국)** 시설 등 기준을 갖춰 **면허를 취득해**야 하며, 갱신제 운영(1년)
- **(미국)** **영업면허**를 동물번식업자(ClassA), 동물판매·이송·경매업자(ClassB), 동물 전시·공연업자(ClassC)로 **구분**하여 발급하고, **3년마다 갱신**
- **(일본)** 판매·보관·임대·훈련·전시 등 동물을 취급업자를 제1종(영리)과 제2종(비영리)으로 구분하여 등록하고 **5년마다 갱신**

□ (생산) 주요국가에서 동물번식업의 경우 동물등록, 근친교배 금지

○ 동물을 번식하여 판매할 경우, 부모견 등 **동물을 등록***하도록 함

* 지역 동물보호센터, 지자체 및 The Kennel Club, ANKC 등 관련 민간협회에 등록

- **(영국)** Microchipping of dogs (England) Regulations 2015
- **(독일)** Hundeverordnung(HundeV), Hunderegister
- **(호주)** Dogs and Cat management Regulations 2017
- **(일본)** 동물애호와 관리에 관한 법률

○ 일부 국가에서는 인위적인 **근친교배***를 통한 단두종(Flat Faced Dog) 번식을 학대로 판단하거나 **금지** * 호흡곤란, 높은 안압 등 유전적 질환 우려

- **(네덜란드)** 퍼그, 불독, 복서 등 20개 품종의 **단두종 개**의 **교배**를 **금지**하나, 체력·건강검사를 통과한 개는 예외적으로 브리딩 허가(2019)
- **(노르웨이)** 불독과 '카발리에 킹 찰스 스파니얼'(단두종)의 교배를 동물학대로 판결

□ (판매·광고) 펫숍 · 온라인 등을 통한 판매 · 홍보 제한 경향

○ 충동적인 반려동물 입양을 막기 위해 **펫숍, 온라인 판매**를 **제한**하고 **브리더를 통한 직접 분양**만 **가능**토록 **규제 강화 추세**

▸ **(벨기에·핀란드·독일)** 펫숍 등에서 판매 금지, **브리더 직접 판매**만 허용
▸ **(영국)** 6개월 미만 개·고양이 펫숍·온라인 판매 금지 및 **브리더 직접 판매**만 허용

- 영국, 독일 등 주요 국가는 **반려동물**에 대한 **경매**를 **금지**

  * (**경매 불가능**) 영국, 독일, 네덜란드, 이탈리아 등

- 덴마크, 캐나다, 일본 등에서는 생산업-경매장-펫숍 방식으로 동물 경매가 가능, 다만 동물보호를 위해 엄격하게 관리*

  * 동물복지를 위한 사육환경 및 영양 관리, 광고·판매 시 동물 건강 등 명확한 정보 제공 의무, 위반 시 벌금, 영업정지, 허가·면허 취소 등 행정조치

○ 미국의 경우 **온라인 광고 사기*** **행위 방지**를 위한 **신고 홈페이지** 운영, **온라인 동물판매 사기 예방 교육**을 시민들에게 **제공**

  * 지리적 이유로 온라인 판매 가능, 이를 이용한 온라인 판매사기가 성행
    온라인 사기 신고 : https://petscams.com/, https://www.ic3.gov/(FBI)

□ (변칙영업) 영리 목적의 사업장과 보호시설이 구분되어 있음

○ 독일, 미국, 영국의 경우 **영리 목적의 보호소는 없는 것으로 파악**

○ 민간보호시설은 **기부금을 받고,** 파양동물 **수용 후 재입양 등 추진**

- 독일의 경우 **도시별로 동물보호단체가 민간보호소를 운영**하는 경우가 대다수, 미국, 영국의 경우 **동물보호단체** 소속의 **보호소**에서 수용

<반려동물 영업관련 선진국과 우리나라 주요 제도 비교>

구분	주요 선진국 동향	우리나라
관리 체계	▸ 영리/비영리, 관리 필요성(번식~전시) 등에 따라 영업을 분류하며, **갱신제**(영국 1년, 미국 3년, 일본 5년)로 운영	▸ 영업 8종 ▸ **갱신제 미도입**
판매 제한	▸ 영업허가 규정 → **펫숍·온라인 판매 제한** → **근친교배 제한** (미국 일부 주) (영국·독일·벨기에) (네덜란드·노르웨이)	▸ 판매제한 없음
동물 파양	▸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민간보호소 없음 ▸ **동물보호단체 운영 민간보호소**에서 **기부금을 받고 수용**	▸ **영리목적 변칙영업** ▸ 민간보호소 파양 미수용

2 시사점

□ 반려동물 생산단계 동물등록을 추진, 불법 생산 · 유기 방지 필요

○ '23.4월부터 생산·수입·판매업에 **거래내역 신고제***가 **도입**되었으나, **개체별 관리체계 미비**로 무허가 번식장 등 **불법 행위 지속**

* 매월 관할 지자체에 동물의 거래내역을 신고(법 제80조, 시행규칙 제50조) 미신고 시 시정명령 조치(법 제86조제7항) → 미시정 시 과태료 100만원

※ 모견 개체별 관리체계 미비로 인해 자견 등 정확한 출처 확인 곤란

- (경기 김포, '23.3) 허가 영업장 외에 추가 장소에서 모견 등 사육 적발
- (전북 진안, '23.5) 비숑 100마리 사육 무허가 영업장 적발

○ 특히 **생산업**의 **부모견**은 **동물등록 대상**에서 **제외**, 관리에 사각

- 공장식 번식, 유기·폐기 거래, 출산 휴식기 미준수 등 **음성적 불법*** **성행**

* 경기 양평군에서 개 약 1,200 마리를 데려와 굶겨 죽인 사례 등

○ **개체 단위로 반려동물의 생산·판매 이력을 관리**하고, 향후 **동물등록제와 연계**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

* 반려동물 생산 이력제 필요 : 85.2%('22, 동물보호복지 국민의식조사)

□ 판매 등 영업장과 보호시설의 역할·장소 분리 등 제도개선 필요

○ **'보호소' 명칭**을 **사용**하면서 **파양수요**를 **악용**한 **변칙영업** 행위로 **소비자 피해가 발생**하고 **혼돈 야기**

- '안락사 없는 보호소', '요양보호소', '동물쉼터'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홍보하고 있어 일반인은 동물보호단체가 운영하는 비영리 '민간동물보호시설'로 혼동
- 일부 동물판매업자들 사이에 사육포기 동물(파양동물)의 보호와 재입양 명목으로 파양비를 챙기는 '변칙영업'이 성행, 언론 등에서 "신종펫숍"이라 명칭

○ **변칙영업 근절**을 위한 **제도적 미비점***을 **보완, 소비자 피해방지 필요**

* 동물보호법 상 민간동물 보호시설의 영리행위 금지 규정이 모호하여 **영리행위 제한 근거 부족**, 민간보호시설과 동물판매업 등 **영업·비영업 간 분리 규정 명확화** 필요

□ 동물복지를 고려한 「번식장-경매장-펫숍」 구조 개편 필요

○ 불법 영업에 대한 처벌과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, 「번식장-경매장-펫숍」의 공급구조에서 발생하는 **동물 학대 지속 발생**

▸ 번식·경매장에서 개 1,200 마리를 만 원씩 받고 데려와 방치·아사 보도(양평, '23.3)
▸ 허가 영업장 외에 추가 장소에서 모견 등의 불법 사육하는 현장 적발(김포, '23.3)
▸ '보호소'를 사칭한 변칙영업 펫숍의 '파양동물 암매장' 사건 보도(여주, '23.5)

○ 독일의 경우 성행하는 반려동물 **온라인 광고 사기 피해방지**를 위해 **예방교육** 및 **캠페인** 실시, **범죄**는 **엄격히 처벌**

▸ 파보바이러스 감염 2개월 미만 강아지 온라인 판매 후 폐사(징역 3년, '21.)
▸ 강아지 19마리를 밀수하여 온라인 판매 후 폐사(징역 3년, '22.)
▸ 온라인에 순수품종, 예방법종 완료 등 허위 광고(징역 2년 4개월, '23.)

○ 외국 사례와 같이 **면허 갱신, 브리더 중심 공급** 등을 **검토**하고, **허위 반려동물 온라인 광고**에 대한 **규제 강화** 필요

□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적극적 점검, 인식개선 등 교육 강화 필요

○ **반려동물**에 대한 **관심 증가**로 관련 영업장이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, **동물 유기·학대 및 불법·편법 영업**에 대한 **우려도 증가**

- **우려**를 **불식**시키고, **건전하고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영업문화 형성**을 위해 **적극적인 영업장 점검·계도** 필요

○ 영업관리 **집행력 강화**를 위한 **인력 확충 및 시스템*** **개편** 필요

* 동물등록제 개편,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위법 요소 사전 차단 및 발굴

○ 동물복지 개념의 반려동물 입양·양육 문화 형성을 위해 **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*** **제도화** 및 **보호소 동물 입양 수용성 개선 필요**

* 미국 일부 주, 영국, 캐나다, 호주 등의 경우 반려동물 입양 전에 반려동물의 적절한 돌봄, 건강, 훈련, 사회화, 사료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음

- 예비 반려인 동물 입양 교육 및 반려인 대상 교육 컨텐츠 강화

Ⅳ. 개선방향 및 전략

비전

동물복지에 기반한 반려동물영업 제도 정착

달성 목표

◇ 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 : (도입) ’24. → (등록완료) ’26.
◇ 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 : (시범) ’24. → (구축·운영) ’26.
◇ 변칙영업 규제 마련 및 이행, 전시업 허가제 전환(’24)

전략 및 과제

4대 전략	세부 추진 과제
1. 반려동물 생산·판매 구조 전환	① **생산업 부모견(모견·종견) 등록제** 도입 ② 생산-판매-양육 **全단계 이력관리** 추진 ③ **온라인 광고 등 준수**사항 강화 ④ 브리더 중심 생산·판매로 전환 검토(중장기)
2. 보호소 위장 변칙영업 근절	① **영업·비영업** 공간의 **물리적 구분** ② 보호시설 **영리 행위 금지** 명확화 ③ 민간보호시설의 **파양동물 수용**
3. 영업장 사육 동물 학대 처벌 및 관리 강화	① **노화·질병 동물** 유기 등 처벌 강화 ② **CCTV 설치** 대상 업종 확대 ③ **전시업 허가제 전환** 및 관리기준 명확화
4. 불법영업 집중 단속 및 교육·상담 강화	① 중앙·지자체·단체 **합동점검 강화** ② 영업자 대상 **준수사항 교육** 확대 ③ **파양 상담** 및 **입양 전 교육** 강화

[반려동물영업 체계의 미래 모습]

	현재	미래 모습
번식 (생산)	• 생산업 부모견 미등록 • 생산업 모견 숫자 파악 불가 • 모견 출산 휴식기(10개월), 노화 동물 학대 확인 곤란	• 생산업 부모견(모견 · 종견) 등록 • 생산업 전체 모견 숫자 파악 • 모견 출산 휴식기, 노화 동물 학대 확인 · 적발 가능
판매 (경매)	• 영업 · 비영업 공간 불명확 • 무허가 생산업 경매 확인 곤란 • 건강 등 정보 제공 미흡 • 번식-경매-펫숍 판매 구조	• 영업 · 비영업 공간 구분 • 무허가 생산업 경매 참여 차단 • 건강상태 등 정보 제공 강화 • 브리더 중심 생산 · 판매 검토(중장기)
전시	• 동물전시업 등록제 • 동물 관리기준 불명확	• 동물전시업 허가제 전환 • 전시동물 관리기준 마련
분양 (구입)	• 반려인이 조건없이 구입 * 높은 파양 수요(약 22%) • 불법 가정 분양 방치	•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제도화 * 반려동물 에티켓, 행동지도 등 • 가정 분양 동물의 등록 시 모견 번호 연결 → 불법 가정분양 퇴출
파양	• 보호소 위장 변칙영업소 (파양비 지급후 파양) • 일부 동물 유기	• 보호소 영업행위 금지 • 민간동물보호 시설 파양 수용 * 파양 기부금·후원금 내역 공개 등 • 불가피한 사유 지자체 인수 * 장기요양, 군복무, 재해 등
이력 관리	• 총량단위 관리 * 거래내역 신고, 영업실적 보고 • 불법 거래 확인 곤란	• 개체단위 이력 관리 * 모견 등록번호 + 자견 개체번호 연결 → 거래내역 신고, 영업실적 보고 * 「생산 - 판매 - 양육·사망」 이력 관리 • 무허가·공장식 번식업 관리·퇴출

Ⅴ. 세부 추진 계획

1 반려동물 생산 · 판매 구조 전환

1 생산업 부모견(모견·종견) 등록제 도입

□ **(등록제 제도화) 동물생산업 모견·종견 등록제 도입을 통한 관리 강화**

○ 「동물보호법」 상 '등록대상 동물의 범위'에 동물생산업의 부모견(모견·종견) 등 **번식시킬 목적의 개를 포함*** 시행령

* 생산자단체·동물단체 등 3차례 간담회 시 동물생산업자가 동물을 번식시킬 목적으로 사육 중인 부모견의 동물등록 도입 필요 의견 제시

** (현행) 주택·준주택에서 기르는개 +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

○ **번식 목적으로 길러진 부모견 현황 파악 및 개체 단위 관리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***

* 생산업 부모견 현황 파악을 토대로 모견 출산 휴식기(10개월) 준수, 개·고양이 2개월령 미만 판매 금지 및 12개월 미만 교배·출산 금지 등 영업자 준수사항 관리

□ **(단계적 도입) 사육현황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점검 후 제도 시행·정착**

○ 모견·종견 등 **동물생산업 사육현황 실태조사**('23.下)

* 동물생산업·소규모동물생산업 동물 사육환경 및 현황, 모견·종견 사육 두수, 개체 관리카드 작성·관리 현황, 번식능력 없는 개체 관리현황 등

○ **「동물보호법」 시행령을 개정, 생산업 동물등록제 의무화**('24.~)

* (일정안) 관계부처 의견조회('23.9월), 입법 예고('23.10~11월), 규제심사('23.12월), 법제처 법제심사('23.12~'24.1월) 및 시행령·시행규칙 확정('24.1월)

- 다만, 2년간 생산업 동물등록제 시행에 대해 유예기간을 부여, **'26년까지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 완료**

※ '번식 목적의 개' 등록을 우선 추진, '번식 목적의 고양이' 적용 여부는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

2 생산-판매-양육 全단계 이력 관리 추진

□ **(도입체계) 모견 등록번호와 자견 개체번호를 연결, 이력관리 추진**

○ (생산) 생산업에서 등록된 **모견별로 자견개체번호**를 **부여**하고, **시스템에** 이를 **등록**하여 관리*

* 동물생산업 허가번호 - (모견) 동물등록번호 - (자견) 개체번호

- **거래내역 신고**(매월)와 연계하여 **자견 개체번호 신고**

○ (판매) 동물 **경매 시**에도 **자견 개체번호**를 **식별 코드**로 부여하고, **펫숍** 판매 시 **자견 동물등록*** **후 판매**

* 동물판매업 허가번호 - (모견) 동물등록번호 - (자견) 동물등록 후 판매
자견 동물등록 시에는 모견의 동물등록번호를 표시하도록 하여 이력 관리

○ (개인 분양) 반려동물(자견) 등록 시 **모견 등록번호를 연계·등록**

* (모견) 등록번호 - (자견) 등록번호, 양수인이 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신고

※ 동물보호센터를 통한 유기동물 입양 등 **필요 시 별도 등록번호 체계 부여**

< (예시) 반려동물 이력관리 도입체계 >

동물영업 분양 (24%)	**<동물생산업>** (허가번호) **모견 등록번호** + 자견 개체번호	→	**<동물경매장>** (허가번호) **모견 등록번호** + 자견 개체번호	→ **<동물판매업>** (허가번호) **모견 등록번호** + 자견 등록번호	→ **양육자**
개인 분양 (52%)	**<양육자(양수인)>** **모견 등록번호** + 자견 등록번호				→
보호시설 입양 등 (11%)	**<지자체 보호센터, 민간동물보호시설>** **동물등록번호 부여**				→

□ **(도입방안) 이력관리 기반 확충 연구용역 및 시스템 구축 추진**

○ 반려동물 이력관리 방안* 연구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 검토('23.下)

* 동물등록번호 체계 개편(자견과 모견 번호 연결, 암수 구분 등) 및 거래내역 신고, 영업실적 보고 등 영업자 신고자료를 활용한 이력관리 방안 검토

○ 연구 결과를 토대로 동물보호단체·영업자 의견수렴(토론회 등)을 거쳐 도입방안 마련('24.上) 및 기능개선, 시스템 구축 추진('25~)

참고4 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 개선(안)

	현재	개선
생산	‣ **생산업 허가(총량관리)** - 모견·종견 동물등록 면제 - 영업실적 보고(연1회) - 거래내역 신고(월1회) - 자견 개체번호 부여 ‣ **개인 분양** - 모견·종견 동물등록 의무	‣ **생산업 허가(총량+개체관리)** - **모견·종견 동물등록 의무** - 영업실적 보고(연1회) - 거래내역 신고(월1회) - 자견 개체번호 부여 **(모견·자견 번호 연결)** ‣ **개인 분양** - 모견·종견 동물등록 의무
판매(경매)	‣ **수입·판매업 허가(총량관리)** - 동물등록(반려견) 후 판매 - 영업실적 보고(연1회) - 거래내역 신고(월1회) - 자견개체번호 관리	‣ **수입·판매업 허가(총량+개체관리)** - 동물등록(반려견) 후 판매 - 영업실적 보고(연1회) - 거래내역 신고(월1회) - 자견개체번호 관리 **(모견·자견 번호 연결)**
양육·사후	‣ **장묘업 허가** - 동물등록 말소(대행 불가) ‣ **운송·미용·위탁업 등록** - 등록한 동물 서비스 ‣ **개인가정 양육** - 동물등록 의무(반려견)	‣ **장묘업 허가** - 동물등록 말소(**대행 허용**) ‣ **운송·미용·위탁업 등록** - 등록한 동물 서비스 ‣ **개인가정 양육** - 동물등록 의무(반려견) **(모견·자견 등록번호 연결)**

3 온라인 광고 등 준수사항 강화

□ **(온라인 광고 등 규제) 전자상거래법 규정 준용 및 허위매물 광고 규제**

○ **영업자**가 **온라인**을 통해 **광고·영업** 시, 「**전자상거래법**」 관련 **규정***을 **준수**하도록 하여 **과대광고 행위**를 **제한**하고, **대면판매 명확화**('24.~) 시행규칙

* 관할 지자체에 통신판매업 신고, 「중요한 표시·광고 사항 고시」, 「부당한 표시·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」 등 표시·광고 관련 규정 준수 등

○ 특히, **다른 법령**의 **표시·광고행위 규제** 사례를 참고하여, **허위 사진** 등을 **이용**하여 반려인을 **유인**하는 **행위 규제**

※ **부당한 표시·광고행위 규제 사례**

- 「**전자상거래법**」 제21조(금지행위)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
  → 제40조(벌칙) 시정명령 미이행 시 징역 3년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
- 「**자동차관리법**」 제57조(자동차관리사업자 금지행위) 존재하지 아니하여 거래가 불가능한 자동차에 대한 표시·광고 및 사실과 다른 거짓 표시·광고 행위 금지
  → 제80조(벌칙) 징역 2년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

□ **(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) 신뢰할 수 있는 동물 건강 정보 제공 의무화**

○ 계약서와 함께 소비자 **필수 정보 제공 항목**으로 동물병원 또는 수의사가 작성한 **예방접종** 및 **건강 확인서 등 증빙 제공**('24.~) 시행규칙

○ 동물의 **건강관리 및 번식·반입·반출 자료** 등 **영업 관련 실적*** **증빙자료**에 대한 **거짓·허위 기재·제출**** **금지** 시행규칙

* 예방접종 증명, 거래내역 신고서, 개체 관리카드, 영업실적 보고서 등

** 현행 규정에는 영업실적 증빙자료의 거짓·허위 기재·제출 시 제재 조항 부재

□ **(온라인 모니터링) 온라인 광고를 정기 모니터링하고, 행정지도 강화**

○ 민간단체, 시민 제보 접수 등을 통한 온라인 광고 정기(반기 1회) 모니터링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적발 시 행정조치('23.下)

4 브리더 중심의 생산-판매 전환 검토(중장기)

□ **(사례조사) 영국·독일 등 선진 해외사례 조사 분석**

○ **펫숍·온라인 판매를 제한**하고 있는 영국 등 **사례, 경매를 허용**하는 스페인·일본 등 **사례 비교 분석**하여 시사점 도출('23.下)

* 면허 갱신, 브리더 중심 공급, 동물 경매 등 해외 사례 조사 및 펫숍 등 제3자판매 금지(전문 브리더를 통해 입양), 일정 기간(ex. 6개월령) 이상 개체만 분양 등 개선방안 검토

<선진국과 우리나라 주요 반려동물 생산·판매제도 비교 검토>

구분	주요 선진국	우리나라
생산	‣ (영국·미국·일본) 면허제 및 갱신제 운영(각각 1년, 3년, 5년) ‣ (네덜란드·노르웨이) 근친교배 금지	‣ 동물생산업 허가제(갱신제 미도입) ‣ 근친교배 제한하지 않음
경매	‣ (영국·독일·네덜란드) 경매 불가능 ‣ (스페인·일본) 경매 가능, 동물 보호·관리 규정 엄격	‣ 경매 가능 ‣ 번식장-경매장-판매장 식 반려동물 공급구조
판매	‣ (영국·미국·일본) 입양센터 또는 허가받은 정식 브리더 직접판매	‣ 펫숍을 통한 판매 가능, 판매방식 규제 없음
온라인 광고	‣ (영국·독일·일본) 정식 등록된 전문 브리더가 직접·대면 판매할 경우 온라인 광고 가능	‣ 허가 영업자가 대면 판매할 경우 온라인 광고 가능하나, 건강정보 등 소비자 정보 제공 미흡

□ **(의견수렴) '브리더 중심 생산-판매' 중장기적 전환 검토 및 공론화**

○ **해외사례 조사** 및 **「동물복지법 체계 개편방안」 연구용역** 등을 통해 **시사점**을 **도출**하고, **중장기적 전환 방향성 검토**

* 동물복지「법체계 개편방안」연구용역(~'23.12)

○ **「동물복지법」** 제정과 연계, **공론화 및 제도화** 검토('24.~)

- **법령 제·개정** 등을 통해 **새롭게 도입**하거나 및 **강화**하는 **제도** 내용의 경우 **「동물복지법」 제정과의 연계** 등을 **감안**하여 검토

2 보호소 위장 변칙영업 근절

1 영업·비영업 공간의 물리적 구분

□ **(공간 분리) 반려동물 영업장과 동물보호시설 공간의 명확히 분리**

○ 영업자 준수사항(시설기준)에 다른 용도의 **시설 간 '분리'**에 대한 개념을 **구체적으로 정의** 시행규칙

* 허가·등록 영업 시설 공통기준 : (현행) 벽이나 층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
→ (개선) 연결된 출입구가 없고, 시야가 차단된 벽이나 층으로 구분

○ **보호시설로 위장**하여 **영업행위**시(예. 반려동물판매) **처벌*** 법

* 영업자 시설·인력 기준 미준수시 처벌(과태료 500만원) 수준으로 검토

2 보호시설 영리행위 금지 명확화

□ **(비영리) 영리 목적 보호시설 운영을 제한, 비영리성을 명확히 규정**

○ 동물보호소, 동물안식처 등 명칭을 불문하고 **영리 목적**의 **민간동물보호시설*** 또는 그와 **유사한 시설**의 **운영·홍보**를 **제한** 법

* 「동물보호법」 제37조제1항 : **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** 유실·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 등을 하여 임시로 보호하기 위한 20마리 이상의 민간동물보호시설

- 민간동물보호시설을 표방하며 유사 영리 시설을 운영·홍보할 수 없도록 **민간동물보호시설**의 비영리성을 명확하게 규정*

* (예시) 동물보호소, 동물안식처 등 명칭을 불문하고 영리 목적의 민간동물보호시설 또는 그와 유사한 시설의 운영·홍보 금지

- **영리 목적**의 **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·홍보 시** 무등록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과 동등한 수준*의 **벌칙조항 마련**

* 「동물보호법」 제97조(벌칙)4항제2호 무등록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 시 벌금 5백만원

○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**연내 법안 발의 등 추진**('23.下)

3 민간동물보호시설의 파양동물 수용 추진

□ **(파양동물 수용) 선진국처럼 파양동물을 민간단체서 수용 검토**

○ 반려인의 파양 관심(반려인의 약 22%)이 변칙영업으로 가지 않도록 선진국처럼 **민간보호소**에서 **일정 조건*** 하에 **수용 방안** 검토

* 파양 절차·방식 등에 대한 민간보호단체 간 합의된 기준 등

※ 해외 선진국 **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 사례**

- ▸ **(미국·영국·독일)**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없음
- ▸ **(기부금)** 민간동물보호시설은 **기부금을 받고 파양동물을 수용 후 재입양**
- ▸ **(민간단체)** 동물보호단체 등 **민간단체 또는 소속 단체가 직접 보호시설을 운영**

<선진국 민간보호시설의 파양동물 수용 비용> * '23.05 기준

국가	업체 및 도시	개	고양이
미국	Animal Humane Society	$55(73,700원)	$55(73,700원)
	SPCA 캘리포니아	$60(80,400원)	$40(53,600원)
	SPCA 플로리다	$250(335,000원)	$210(281,400원)
	SPCA 새크라멘토	$75(100,500원)	$30(40,200원)
영국	Battersea Dogs & Cats home	£50(83,445원)	£50(83,445원)
	All Dogs Matter	£20(33,378원)	-
독일	뮌헨	110€(162,470원)	60€(88,620원)
	브레멘	140€(206,780원)	100€(147,700원)
	라이프찌히	180€(265,860원)	90€(132,930원)
	보훔	250€(369,250원)	100€(147,700원)
	함부르크	250€(369,250원)	150€(221,550원)

□ **(공론화·제도화) 민간동물보호시설의 파양동물 수용 공론화 및 제도화**

○ 파양동물 수용 등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 해외사례* 조사('23.下)

* 민간동물보호시설 파양동물 수용, 기부·후원금 내역 공개 등 운영 사례 조사

○ 파양 수용 시 **기부금 투명성 제고**를 위한 제도적 장치* 마련('24.~) 시행규칙

* 민간동물보호시설의 파양동물 수용 시 기부금·후원금 처리 및 회계 내역 공개 등

3 영업장 사육 동물 학대 처벌 및 관리 강화

1 노화·질병 동물관리 및 학대 처벌 강화

□ **(수의사 진단) 질병·상해 동물 등에 대한 건강관리 강화**

○ 동물생산업에서 사육되고 있는 동물의 질병·상해 시 수의사 검진 및 내역기록·관리 의무화*('24) 시행규칙

* (예시) 질병·상해 동물의 건강 상태를 수의사가 검진 후 그 검진 내역을 기재하고, 회복 불가 등 수의사 진단 결과에 따라 수의사가 동물을 인도적 방법으로 처리

**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 노령·은퇴견에 대한 보호·관리 방안 검토 병행

□ **(학대 처벌 강화) 노화·질병 동물을 학대 시 처벌을 강화**

○ 현행 노화·질병 있는 동물의 유기·폐기 목적 거래 시 처벌 규정을 인도적 처리 위반 수준(제46조제2항 위반, 벌금 3백만원)으로 강화('24) 법

* (현행) 과태료 3백만원(영업정지 3개월) → (개정) 벌금 3백만원(영업허가 취소)

2 CCTV 설치 대상 업종 확대

□ **(대상업종) 동물생산업 및 동물전시업 등 CCTV 설치 대상업 포함**

○ 생산(사육실, 분만실 및 격리실)·수입(사육실, 격리실)·동물전시업(전시실, 휴식실) 등 영업장 내 CCTV 설치 대상 업종 확대('24) 시행령

* (현행) 판매·장묘·위탁관리·미용·운송업 등 5종 → (개정) 생산·수입·전시업 등 3종 추가

○ CCTV를 활용하여 영업장에서 발생 우려가 있는 안전사고 및 동물 학대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·보존

3 전시업 허가제 전환 및 관리기준 명확화

□ **(전시업 허가제) 동물전시업을 허가제로 전환, 허가 심사 강화**

○ 동물전시업을 허가제로 전환하여 시설·인력 및 사업계획에 대한 현장·시설조사 및 검토 강화 법

○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연내 법안 발의 추진('23.下)

□ **(관리기준 마련) 동물전시업 사육 동물 관리에 대한 기준 명확화**

○ **전시업 사육 동물 보호와 학대 방지**를 위한 「동물전시업 등 사육 동물 관리기준」 연구용역('24.上), **기준마련 등 제도화** 검토('24.下) 시행규칙

* 간식 제한, 시설분리, 자연채광, 바닥재 기준, 중성화 의무 등 검토, 수용 동물 수 및 반려동물 외 다른 동물의 전시·사육 제한, 교육·실습 동물 관리기준 검토 병행

4 불법영업 집중 단속 및 교육·상담 강화

1 중앙·지자체·단체 상시 점검 및 협업 강화

□ **(상시 점검) 「합동·기획」 점검체계를 상시화, 불법·편법영업 행위 근절**

○ 금년 새롭게 개편된 반려동물 **영업자 점검체계 운영**사항을 **평가**하여 **보완·강화**하고(23.下), **상시 점검 체계 구축**('24.~)

< 개편된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체계 >

구분		내용	주체	시기
합동 점검	상반기 하반기	- **생산·판매·전시업** 등 동물복지 민감 업종 **집중 점검** - `23.4월부터 강화되는 준수사항* 이행점검 * 수입·판매·장묘업 허가제 전환, CCTV 설치 강화, 거래내역 신고제 등	정부·지자체	**상·하반기 (각 1회)**
기획점검 (현장전문가 협조·협업)		- 반려동물 **불법·편법**영업 **심층 점검** - **온라인 광고 등 문제영업**에 대해 중앙·민간 경찰(특사경) 공동 **원포인트 조사·단속**	정부·지자체	**수시**
기본 점검	상반기 하반기	- 자율 점검계획 수립, **영업자 전수 점검** - 전년도 점검 결과를 기초로 영업자 현행화 - 기본점검 시 의무교육 이수 독려·홍보 병행	지자체 (시·군·구)	**연중 (1회 이상)**

- 영업 허가·등록 시 시설·인력 기준 등 **중요 점검 사항**에 대한 **해설서, 모범사례 및 체크리스트**를 **마련**하여 **실질적 단속 추진**

* 생산업 단체 간담회 의견 : 지자체 공무원이 허가기준·절차 등을 잘 몰라 제대로 된 점검·단속이 안된다는 지적 많음

□ **(협업 강화) 지자체 영업장 점검·관리 관련 집행력 제고 추진**

○ 지자체 동물복지 **인력 확충 및 전담부서 마련 노력 지속**

- '23년 행안부의 **지자체 배포자료**(인력 재배치 관련 국가정책수요)에 '동물복지인력 확충' 포함('22.11. 기조치) 및 **지자체 독려**

> ※ **부여군** : **동물보호팀**(총 4명)
> - '20년 축산과 신설시 과 내에 '동물보호팀'도 함께 신설하여 전담부서 운영
> - 팀장급 등에서 의지를 갖고 공무직 등 인원 확보 노력 지속 추진 중

- **「동물보호법」**에 **지자체장**의 **적정인력 확보 책무 명시** 등 검토

* (예) 관내 반려동물 양육가구수에 비례한 인력 확보 등(동물복지법과 연계)

< 유사 입법례 : 가축전염병 예방법 >

> **법 제7조(가축방역관)** ①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에 가축방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관을 둔다.
>
> ② ~ ⑤ (생 략)
>
> ⑥ 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관을 두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방역관의 기준 업무량을 고려하여 **그 적정 인원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**
>
> **시행령 별표 1(가축방역관 기준 업무량 및 적정인원 배치기준)**
>
> (예) 기초지자체는 관할 내 축산농가수 기준 300호 미만은 1명, 300~600호는 1.5명, 600~900호는 2명, 900~1200호는 2.5명, 1,200호 이상은 3명 이상 확보

○ **동물보호관**(지자체 담당자)과 **명예동물보호관**(동물보호단체 등)* 간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 등 **협조·협력 확대 및 포상 강화**('24.)

- 동물보호관 관리하에 명예동물보호관 역할 확대 검토(법령 개정 등)

* (현재) 동물보호관 지원, 단순 계도·홍보 → (개선안) 영업자 공동 점검 등
(사례) 일부 지자체에서 수의사를 명예동물보호관으로 위촉, 피학대동물 진단·치료 등 실시

- 일선 **공무원·현장 전문가 사기 진작**을 위한 **표창 및 포상***

* (현재) 표창(장관 표창) → (개선안) 대통령·국무총리 표창 및 포상(격려금 등) 검토

2 영업자 대상 준수사항 교육 확대

□ **(교육 확대) 반려동물 영업자 의무 교육 관련 컨텐츠를 강화**

○ 동물**장묘업** 등 신규 추가된 의무교육자 **교육과정** 개설('23.下)

○ **지자체** 등 주관 반려동물 관련 교육 프로그램과 **연계한 교육과정 발굴** 및 해당 **교육 이수 시 영업자 의무교육 인정*** 검토('24.~)

* 지자체, 동물보호단체 및 협회 주관 교육 이수증 제출 시 일정 시간 인정 등

□ **(현장 교육) IT기기 활용이 어려운 영업자 등 대상 수요기반 현장 교육**

○ 고령 영업자 대상 교육, 업종별 교육 등 **수요기반 현장교육** 추진

○ 온라인 강의 병행 및 **교육 강사 Pool 구성 및 다양화**('24.~)

* 애견협회, 애견연맹, 영업자 협회 등을 통한 교육 수요 조사

3 파양상담 및 입양전 교육 강화

□ **(파양상담) 반려동물 파양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파양상담 채널 마련 검토**

○ 선진국의 파양동물 수용 시 파양상담 채널 및 사례 조사('23.下)

○ 선진국 사례를 토대로 지자체(동물보호센터)-민간동물보호소 소개* 등 **파양상담 채널 마련** 검토('24.)

* 사육 포기 동물의 인수를 신청하였으나 미승인 시 민간동물보호소 소개·알선 등

□ **(입양 전 교육) 예비 반려인 가족 및 자녀 대상 입양 전 교육 강화**

○ 예비 반려인 **동물 입양 교육** 및 **반려인** 대상 **교육 컨텐츠 강화**('24.)

- 동물보호센터를 통한 예비 반려인 대상 교육과정 개발
- 예비 반려인 자녀 대상 펫티켓 등 시·도 교육청 교육과정 연계 홍보

○ **예비 반려인** 등 대상 반려동물 **입양 전 교육** 제도화* 검토 병행('24.)

*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의무화 해외 사례 검토

Ⅵ. 향후 일정

□ 의견수렴, 연구, 실태 조사 등을 거쳐 **과제별 추진방식 구체화**

○ **개별 과제**의 현장 수용성과 실용성 제고를 위해 **동물보호단체, 반려동물 영업 업계, 전문가 등과 긴밀한 협의**를 거쳐 **구체화**

○ 추가 조사 및 논의 필요과제는 **연구용역·실태조사** 등을 통해 **세부 추진방안 마련**

<「반려동물 영업 강화 방안」 세부과제별(총 24개) 분류(안) >

구분	수단별 분류	신규(14개), 강화(10개)
제도개선 과제	「동물보호법령」 개정 14개	신규 7개, 보완·강화 7개
	가이드·지침 마련 등 1개	보완·강화 1개
예산사업 과제	사업지원, 교육·홍보 등 3개	신규 1개, 보완·강화 2개
연구·검토 과제	연구용역·실태조사 등 6개	신규 6개

□ **동물보호법 개정 및 중장기 제도 개편 연구** 등 추진

○ 연내 **「동물보호법」 개정(안) 발의** 등 **원포인트 개정** 추진('23.下)

- **영리 목적 보호시설 운영 제한, 전시업 허가제 전환** 등 현행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

○ **「동물보호법」 시행령·시행규칙** 등 **개정**('23.下~'24.)

- **부모견 등록 의무화**, 영업 **시설·인력기준** 및 **영업자 준수사항** 강화 등

* (일정안) 관계부처 의견조회('23.9월), 입법 예고('23.10~11월), 규제심사('23.12월), 법제처 법제심사('23.12~'24.1월) 및 시행령·시행규칙 확정('24.1월)

○ **「동물복지법」** 체계 개편과 연계, **공론화 및 제도화 검토**('24.~)

- 브리더 중심의 반려동물 생산·판매 구조 개편 등

□ **예산 수반 사업***의 경우, **'24년 시범사업 및 '25년 농식품 예산**(안)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

* 동물보호정보시스템(APMS) 개선, 반려동물 이력관리체계 구축 ISP 등

참고5 세부과제별 추진일정(안)

추진과제	일정	비고
전략 1 : 반려동물 생산·판매 구조 전환		
1 생산업 부모견(모견·종견) 등록제 도입		
ㅇ 동물생산업 사육현황 실태조사 신규	'23.下	반려산업동물의료팀
ㅇ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제 의무화 신규 시행령	'24~	동물복지정책과 반려산업동물의료팀
2 생산-판매-양육 전단계 이력 관리 추진		
ㅇ「반려동물 이력관리 방안」 연구용역 신규	'23.下	반려산업동물의료팀
ㅇ 도입방안 마련 및 기능개선, 시스템 구축(ISP) 추진 신규	'24~	동물복지정책과 반려산업동물의료팀 검역본부
3 온라인 광고 등 준수사항 강화		
ㅇ 온라인 광고 등 규제 강화 시행규칙	'24~	반려산업동물의료팀
ㅇ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 강화 시행규칙	'24~	반려산업동물의료팀
ㅇ 온라인 모니터링 추진 신규	'23.下	반려산업동물의료팀
4 브리더 중심의 생산-판매 전환 검토(중장기)		
ㅇ 반려동물 생산-판매 유통 체계 해외사례 조사 신규	'23.下	반려산업동물의료팀
ㅇ 동물복지「법체계 개편방안」 연구용역 신규 계속	'23.下	동물복지정책과
전략 2 : 보호소 위장 변칙영업 근절		
1 영업·비영업 공간의 물리적 구분 강화 시행규칙	'24~	반려산업동물의료팀
2 보호시설 영리행위 금지 명확화 신규 법	'23.下	동물복지정책과
3 민간동물보호시설의 파양동물 수용 추진		
ㅇ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 해외사례 조사 신규	'23.下	동물복지정책과
ㅇ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 기준 개선 신규 시행규칙	'24~	동물복지정책과

추진과제	일정	비고
전략 3 : 영업장 사육 동물 학대 처벌 및 관리 강화		
1 노화·질병 동물 학대 등 처벌 강화		
ㅇ 질병·상해 동물 건강관리 강화 강화 시행규칙	'24~	반려산업동물의료팀
ㅇ 노화·질병 동물 학대 시 처벌 강화 신규 법	'24~	반려산업동물의료팀
2 CCTV 설치 대상 업종 확대 강화 시행령	'24~	반려산업동물의료팀
3 전시업 허가제 전환, 관리기준 명확화		
ㅇ 전시업 허가제 전환 신규 법	'23.下	반려산업동물의료팀
ㅇ 전시업 사육 동물 관리기준 마련 강화 시행규칙	'24~	반려산업동물의료팀
전략 4 : 불법영업 집중 단속, 교육·상담 강화		
1 상시 점검 및 협업 강화		
ㅇ 영업자 합동·기획 점검체계 상시화 강화	'23.下	반려산업동물의료팀
ㅇ 지자체 집행력 제고 및 포상 강화 강화	'23.下	동물복지정책과
2 영업자 준수사항 교육 확대		
ㅇ 영업자 의무교육 컨텐츠 확대 강화	'24~	반려산업동물의료팀
ㅇ 영업자 수요기반 현장 교육 추진 강화	'24~	반려산업동물의료팀
3 파양동물 상담 및 입양 전 교육 강화		
ㅇ 파양 상담 체계 마련 검토 신규	'24~	동물복지정책과
ㅇ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강화 신규	'24~	동물복지정책과